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

주요 개정 내용

□ 배경

○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개정 사항을 반영한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 공고 개정 필요

◈ 건강보험 개정 사항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12호, 2021.12.16.)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19호, 2025.7.16.)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42호, 2025.8.22.)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48호, 2025.8.27.)
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9호, 2025.12.30.)

□ 관련근거

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(제2025-188호, 2025.8.29.)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(제2026-156호, 2026.6.2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 ·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□ 주요 개정 내용: [별표 2] 진료코드

○ **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** 변경

- **(기본코드)** 입원형 호스피스 ‘한방병원 내 의과’ 수가 신설 등
- **(산정코드)**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

□ 시행일자

○ 공고한 날부터 시행

참고 **진료코드 관련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주요 반영 내용**

□ 기본코드 관련

구분	진료행위명	대분류코드 반영 내용
의·치과	마취료	▪ (신설) 치과마취료(LZ)
	입원형 호스피스	▪ (신설) 분류번호 5: 한방병원 내 의과
	연명의료중단등결정	▪ (변경) 분류번호 3: 병원, 요양병원, 한방병원

□ 산정코드 관련

구분	대분류명칭	산정코드 반영 내용
의·치과	집중치료실 입원료	▪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코드(의미Ⅰ) 신설 3: 입원 초일~7일까지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), 4: 입원 8~14일까지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)
	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	▪ 산정코드 문구 변경 1: 2시간이상~6시간미만(정신안정실)
	마취료	▪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코드(의미Ⅱ) 신설 N: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(별표3), O: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야간(별표3), P: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공휴일(별표3)
	처치 및 수술, 중재적 방사선시술	
	응급 기본진료료	▪ 가산 추가 신설에 따른 산정코드(의미Ⅱ) 신설 Z: 응급